2021학년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입학전형 요강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입학관리부(2020.4.9. 온라인개학 기준)

1 지원자격

□ 중학교 재학생, 졸업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적 역량이 있으며 인문·예술 융합 소양을 갖춘 자로서 학교장이나 국·공·사립학교에 재직하면서 지원자를 지도했던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2 선발인원

전형 유형		인 원	비 고
정원 내	일반 전형	84명	• 전국 단위 모집
	지역 전형	2명 이내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정원 외	외국인 전형	2명 이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국어로 수학이 가능한 자
	사회통합대상자 전형	2명 이내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총계 (90명 이내	

^{* 「}정원 외」로 지원한 경우, 「정원 내」도 중복 지원한 것으로 처리 (정원 외 전형 중에서는 한 가지 유형만 선택하여 지원)

3 원서접수 및 전형 안내

가. 원서 접수 일정

구분	온라인 원서 접수	우편서류 제출	자기소개서 입력	추천서 입력
기간	5.1.(금) ~ 5.7.(목)		5.1.(금) ~ 5.8.(금)	5.1.(금) ~ 5.8.(금)

나. 단계별 전형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영역	학생 기록물 평가	영재성 평가	응합 캠프
내용	제출 서류를 통한 평가 자기주도 학습능력, 영재성, 인성 등의 종합 평가	수학·과학 역량 평가 수학·과학 중심의 융합·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영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 평가
전형일	원서 접수 이후 실시	6.14.(일)	7.26.(일)
선발 인원	1,000명 내외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	90명 이내 (2단계 우선 선발 인원 포함)
단계별 합격자 발표	6.5.(금) 17:00	7.17.(금) 17:00	8.14.(금) 17:00

^{* 2}단계 전형 통과자 중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전형을 통해 8명 이내의 인원을 2단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 선발

구분	내용	비고
대상	2단계 우선선발 대상자, 3단계 합격자	
제출물	학교생활기록부Ⅱ	2학기 성적 반영 이후 제출
평가	최종 서류 평가	대상자에게 평가기준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중	발표일 추후 공지

[※] 등록 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후보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 서류

		제출 방법			
구분	제출 서류	온라인 입력	우편 제출		
	입학원서(1부)	0	0	• 온라인 접수 후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고	학교생활기록부 Ⅱ (1부)		0	• 단면 인쇄하여 원본대조필 및 간 • 각 면 우측 상단 접수번호 기재, 클 - 중1재학생: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 중2,3재학생 및 졸업생: 중학교 - 검정고시 합격자: 최종학교 생활 ※ 민원 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 간인 날인 생략	립 상철(스테이플러 금지) Ⅰ, 중학교 생활기록부 Ⅱ 생활기록부 Ⅱ †기록부 Ⅱ
	자기소개서(1부)	0		• 온라인 원서 접수 후 입력	• 기록 제외사항
	지도교사 추천서 (A, B 각 1부)	0		 지원자의 전형료 결제 이후 추천서 입력 가능 지도교사: 국·공·사립학교 재직중에 지원자를 지도한 교사 추천서A와 추천서B를 서로 다른 교사가 각각 온라인 입력 추천자의 지도교과, 담임여부, 현재 재직상태는 관계없음 	영재교육원·영재학 급 수료 여부 - 교과관련 인증시험
	중학교 1,2학년		0	•「상급학교 입학자격부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를 소속중학교장으로부터
	검정고시 합격자		0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추가 	외국인 전형		0	• 외국인 전형 지원자에 한함 •[별첨2] 자료 참조	
	사회통합대상자 전형		0	• 사회통합대상자 전형 지원자에 한 •[별첨1] 자료 참고	함

[※] 모든 우편 제출 서류는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않음

^{*} 인터넷 및 우편 서류 제출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우편물 도착여부는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유선 확인은 불가함)

나. 서류 제출 방법

제출방법	내 용
온라인 접수	(기 간) 2020.5.1.(금) 09:00 ~ 2020.5.7.(목) 20:00 (예비입력) 2020.4.28.(화) 12:00 ~ (사 이 트) http://www.jinhakapply.com (진학사 원서접수) (자기소개서 입력마감) 2020.5.8.(금) 20:00 (지도교사추천서 A, B 입력마감) 2020.5.8.(금) 20:00
우편 제출	(기 간) 2020.5.1.(금) ~ 2020.5.7.(목) (접수방법) 우편접수 2020.5.7.(목) 소인까지 유효함 (접 수 처) 30099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265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입학담당관실 ※ 우편 제출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한 우편봉투표지를 서류봉투에 부착하여 제출 ※ 방문접수 불가

5 전형료

구 분	1단계 지원자	2단계 전형 대상자	3단계 전형 대상자
전형료	30,000원	30,000원	30,000원

- ※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
-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별도 부담함
- ※ 사회통합대상자 전형 지원자의 전형료는 면제됨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본인부담)

6 유의사항

- ※ 전형 관련 일정 및 내용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제출 서류 미비 및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본교는 과학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예술영재학교로서 의·치·한·약학계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이 적합하지 않음. 본교는 해당 학교로의 진학 지도를 실시하지 않으며, 본교 교원은 해당 대학 진학을 위한 추천서를 작성하지 않음
- ※ 기타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함
- ※ 홈페이지 http://sasa.sjeduhs.kr/입학안내 ※ 전화 044-903-1121~4

전형기간 빈번한 전화 문의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제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 전화 문의 가능시간: 평일 09:00 ~ 12:00, 13:30 ~ 16:30

[별첨1] 사회통합대상자 전형의 지원 유형 및 추가제출 서류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유형구분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하는 자	**공고일(2020.3.2)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거주지 소재의 학 교에 재학(졸업) 중인 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기준) ·주민등록초본 각 1부(보호자, 지원자)	
행정	! 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 L육대상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결과통보서 1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기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그 밖 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기준)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1부	
회 . 경제적 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으로 등재된 자	·해당 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재원확인증 1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 성원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1부 -결혼이민자의 자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자녀: 부 또는 모의 기본 증명서 1부	
	소년 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기준) ·해당증명서 1부	
	순직공무원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순직확인서 1부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별첨2] 외국인 전형 대상 조건 및 외국인 전형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 전형 대상 조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 한국어 수업이 가능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다목
 - 제2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 입학하여 졸업(졸업예정)한 자
 -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 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 ※ 이중(복수) 국적을 가진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리

2. 외국인 전형 추가 서류

- 가.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재학) 증명서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
 - ▶ 한글(영문)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표시)
 -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홈페이지-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 학력인정 미공시 학교
 - ▶ 민원인이 정규교육과정임을 소명하거나 영사확인(아포스티유)을 받아 제출
- 나. 유학 전,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정원외 관리, 재학사실 등) 증명서
 - •최종 재학학년 및 최종 재학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학생만 제출)
- 라. 가족관계 증명서
 - 순수외국인은 가족 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 제출
- 마.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부모, 학생 모두 제출
 -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학생만 제출